

연계전공 운영규칙

제정 2007. 05. 14
개정 2009. 02. 20
개정 2009. 12. 1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06. 17
개정 2016. 02. 01
개정 2016. 03. 24
개정 2018. 03. 05
개정 2021. 02. 25
개정 2022. 01. 24
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22조에 의한 연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4.)

제2조(정의) 연계전공이라 함은 통상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의미한다.(개정 2013.12.24)

제3조(적용범위) 연계전공과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연계전공의 운영은 참여 학과(전공)의 교수 각 1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개정 2009.12.17) (개정 2013.12.24)

② 주관학과(전공)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9.12.17) (개정 2013.12.24)

③ 연계전공의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2.20) (개정 2013.12.24)

1. 신설 신청시기 : 시행 학년도 3개월 이전 소정 기간

2. 신설 절차 : 주관 학과(전공)에서 소정의 「연계전공신설제안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④ 신설된 연계전공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연계전공별 세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둘 수 있으며, 기준의 제·개정은 해당 연계전공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1.24.)

제4조의2(개설 연계전공) 본 대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9.12.17.)

(개정 2013.12.24.) (개정 2015.06.17.) (개정 2016.02.01.) (개정 2016.3.24) (개정 2018.3.5.) (개정 2021.2.25.) (개정 2022.01.24.) (개정 2022.02.25.)

- 제5조(교육과정)**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36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6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02.20) (개정 2013.12.24)
-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2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3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02.20) (개정 2013.12.24)
- ③ 연계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9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01.24.) (개정 2022.02.25.)
- ④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전공)의 기 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 과목 이내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 ⑤ 연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학과(전공) 과목을 연계전공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업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02.25.)

- 제6조(전공이수)**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진급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연계전공 과목은 연계전공 신청 이전에도 이수할 수 있다.
- ③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2.20.) (개정 2022.01.24.)

제7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학칙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연계전공 운영 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계전공 운영 세칙」에 의거 설치된 연계전공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333호 : 2021.2.2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457호 : 2022.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미래자동차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주관대학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설 연계전공

연계전공	참여 전공	주관 대학 또는 학과(전공)	도입 시기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경영학, 미디어학, 스포츠레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전공)	2006학년도
인문사회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학과,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행정학 과, 사회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공학전공)	2016학년도
자동차SW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공학전공)	2016학년도
미래자동차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2022학년도